

# 대학부설연구소 운영지침

제정 2005.11.23 개정 2013. 8. 23 개정 2020.10.15  
개정 2011. 3. 1 개정 2019. 1. 28  
개정 2013. 3. 1 개정 2019. 7. 22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대학 부설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소의 설립기준) ① 연구소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: 2020.10.15)

1.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연구목적과 방향에 적합하여야 하며,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.
  2. 독립적인 연구소로 발족될 필요성(대외 연구비 획득, 대외 위상의 격상, 융합연구 활성화 및 별도 설립의 필요성 등)이 있어야 한다. (개정: 2020.10.15)
  3. 전임교원 및 전담 연구원 5인 이상이 참여 및 일정액의 수탁연구비 확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. (개정: 2020.10.15)
  4. 사업계획이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.
  5. 연구소의 자체적 경비조달 및 운영능력(인건비 및 연구소 운영공간 등 자체해결 가능)이 있어야 한다.
  6.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행정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0.10.15)
- ② 법인승인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추가로 다음 설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한다. (개정: 2019.7.22)

1. 법인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(개정: 2019.7.22)
2.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 행정부서 및 정규직 직원 존치 필요성 (개정: 2019.7.22)
3. 독립된 건물 보유 가능성 (개정: 2019.7.22)
4. 기타 법인 이사장이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(개정: 2019.7.22)

③ 연구소의 설립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: 2019.7.22)

1. 신청서류 제출: 설립계획서 1 부 (별지서식 1)
2. 설립절차: (별표1) (개정:2020.10.15)

제3조(연구소 평가) ① 연구소 평가는 <별표2>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를

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연구소의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. 단, 국가사업기반연구소 및 병역지정연구소의 경우 그 사업이 종료하거나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 (개정: 2020.10.15)

② 연구소 정기평가는 2년 주기로 일괄 실시하며 설립 2년 미만 연구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 연구산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10.15)

③ 연구소 평가기간은 해당 평가시기로부터 이전 2 년으로 한다.

④ 연구소 평가위원회는 연구산학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연구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 단 필요시 위원회가 추천한 평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⑤ 연구소 평가 기준은 본 지침 <별표2>에 따른다. (개정: 2020.10.15)

⑥ 연구소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: 2020.10.15)

1. 연구처에서 평가대상 연구소에 대해 <별표2>의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. (개정: 2020.10.15)

2. <별표2>의 필수요건을 충족한 연구소는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유지·운영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10.15)

3. <별표2>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소는 평가위원회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 (개정: 2020.10.15)

4. 평가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유지·운영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. (개정:2020.10.15)

제4조(연구소의 폐쇄) ① 연구소 폐쇄 시 운영비 집행잔액은 대학에서 흡수하고,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원소속으로 이관한다. 다만, 부서승인연구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산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하에 운영비 집행잔액을 원소속으로 이관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10.15)

② 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, 사무용 비품 등의 자산은 대학에 귀속된다.

③ 연구소 폐쇄 및 통합시 소장은 소속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잔여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동 폐쇄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유지·운영을 원할 경우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산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. (개정: 2020.10.15)

1. 국가사업기반연구소로서 협약 중단 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(개정: 2020.10.15)

2. 병역지정연구소로서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(개정: 2020.10.15)

3. 본 지침 제3조의 정기평가에서 연속 2회 이상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
(개정: 2020.10.15)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11 월 23 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8 월 23 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1 월 28 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월 11 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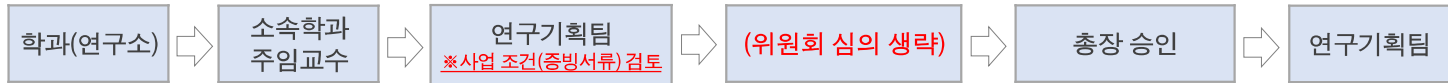
1. (시행일) 본 지침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신규 설립하는 연구소에 적용한다.  
다만, 기존연구소의 경우 평가 및 폐쇄에 관하여는 본 지침 개정 전 규정에 따를 수 있다.

<별표1: 연구소 설립 절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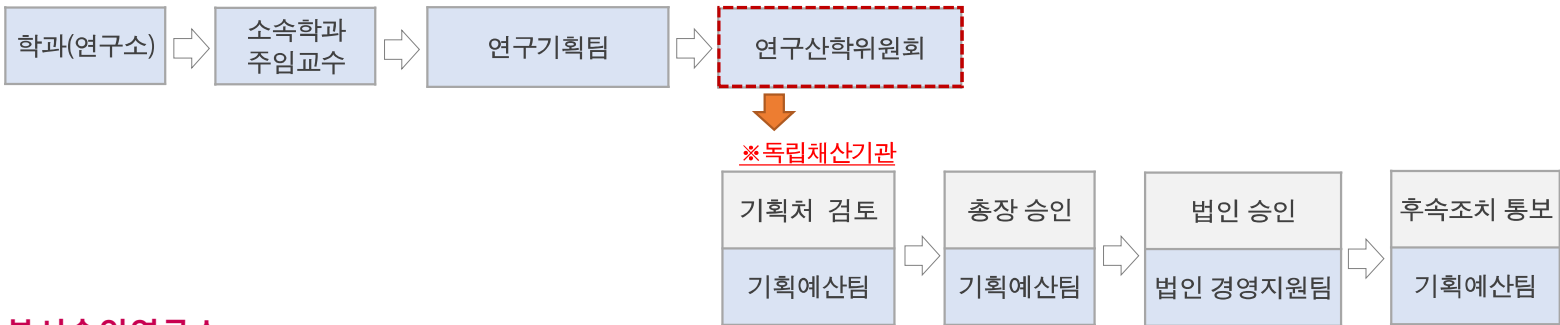
▶ **중점연구소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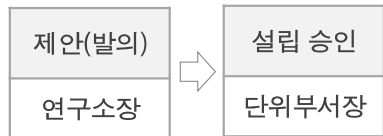
▶ **국가사업 기반 연구소, 병역특례연구소**



▶ **독립채산연구소**



▶ **부서승인연구소**



<별표2: 연구소 평가기준>

	구분	평가항목	세부기준	비고
필수 요건	국가사업 기반 연구소	사업 계약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</li> </ul>	
	중점연구소	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(2년 평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부지원: 이공분야 5억, 인문사회 1억 이상</li> <li>• 교비지원이 있는 경우 금액제한 없음</li> </ul>	
	병역특례연구소	병역특례 배정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병역특례기관 지정 해제시까지 유지</li> </ul>	
	독립채산연구소	독립채산기관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독립채산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자격유지평가 실시</li> </ul>	별도 규정에 따름
기타 사항	공 통	연구업적, 대학의 정책, 참여 연구원의 구성(2개 학과 이상), 연구소 독립공간보유, 연구전담인력 보유, 연구지원인력 지정, 연구지원 인력 교육 이수(매년 10시간 이상의 교육 참여/인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		